

# 규정심사위원회 규정

□ 제정 : 1998. 5. 21

제1조(명칭) 이 위원회는 수원대학교 규정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기
2.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기 명령
3. 규정의 정리 및 편찬
4. 규정집 제작
5. 규정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

1. 심의 규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처·과장
2. 법률학 또는 심의규정 관련 분야의 전공교수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자
3. 심의규정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무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자

③ 간사는 기획담당관이 된다.

제5조(임명 및 임기) ①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및 일반직원 중에서 전조의 구성에 따라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.

제7조(실무자회) 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, 정리 또는 위원회의 위임 사항을 심의·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규정정리실무자회(이하 "실무자회"라 한다.)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실무자회의 장은 기획담당관이 되며, 위원은 관련부서의 과장, 계장 및 실무담당자 중에서 실무자회의 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④ 실무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실무자회의 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회의록) 위원회 및 실무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제9조(확정)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모든 규정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 확정한다.

제10조(사무관장)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실에서 관장한다.

제11조(해산) 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2조(규정의 개·폐) 이 규정의 개·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14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위원회설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제정 및 개폐된 규정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